

#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995년 HACCP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을 권장하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업체들의 규제 순응이 높을수록, 일반국민들의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제도 적용기준이 합리적일수록 HACCP의 의무적용을 조기에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 보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들어가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이나 최근 발생한 식품사고의 사회적 파장 또한 그 여파가 컸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사고에 대한 높은 관심정도에 비해서 식품업체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 규정 등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 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식품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 인지도 및 HACCP 의무적

용 규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최근 조사에서 낮게 나타났다. 향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와 식품산업의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원고에서는 6개 HACCP 의무적용 품목<sup>1)</sup>에 대한 규제 순응 제고방안과 더불어 HACCP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5년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HACCP의 자율적용 입장을 유지해 오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적

1) 현재는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병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에 김치류가 추가되어 7개 품목에 대하여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으로 의무적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해당업체들의 규제 준수가 높을수록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정착과 단계별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HACCP 적용의 법적 근거 및 지정·추진 현황

### 1)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으로 “동법 제32조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하며, HACCP 의무적용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련 고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58호(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규정되어져 있다.

### 2) 지정 현황

식품위생업소 및 HACCP 지정업소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HACCP 적용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나 그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2008년 1월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HACCP 지정 업소수를 살펴보면 의무적용 업소수는 121개소, 자율적용 업소수는 조금 더 많은 157개소로 나타났다. 고시품목의 HACCP 지정이 비고시품목(83개소)보다는 약 3배 정도 많은 257개소로 조사되었다. HACCP 지정업소는 1999년 5개소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1월 기준으로 340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 300개소, 집단급식소 40개소)로 증가하였다. 향후 HACCP 의무적용이 매출액과 종사원수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될 경우 더 많은 증가가 예측된다.

표 1. HACCP 지정업소 비율 (2006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업소수	HACCP	비율	업소수	HACCP	비율	업소수	HACCP	비율
1999	28,659	5	0.02	15,215	5	0.03	13,444	0	0.00
2000	31,000	13	0.04	16,055	8	0.05	14,945	5	0.03
2001	33,283	19	0.06	16,863	12	0.07	16,420	7	0.04
2002	37,214	44	0.12	18,783	30	0.16	18,431	14	0.08
2003	39,779	75	0.19	19,324	53	0.27	20,455	22	0.11
2004	42,959	102	0.24	20,803	75	0.36	22,156	27	0.12
2005	47,563	144	0.30	21,927	113	0.52	25,636	31	0.12
2006	51,425	221	0.43	22,793	184	0.81	28,632	37	0.13

주: 연도별 지정현황, 농림부 이관업소 및 지정취소 업소수 제외함.  
 자료: 윤시문 외,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준수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3) 추진 현황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식약청과 농림부의 단계별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HACCP은 농림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농림부는 전도축장에 대해 HACCP의 의무적용을 도입 및 실시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준수도를 고려하여 현재는 의무적용과 자율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 3. 규제순응의 이해

### 1)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규제순응의 확보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환경의 조성 그리고 정책구상, 집행능력, 대상집단의 행태 등의 분석을 통해서 이뤄지게 된다.

그림 1. 부처별 HACCP 의무적용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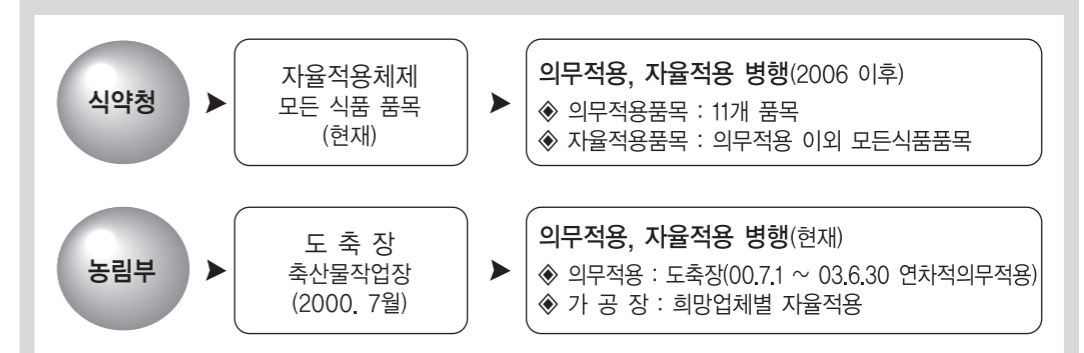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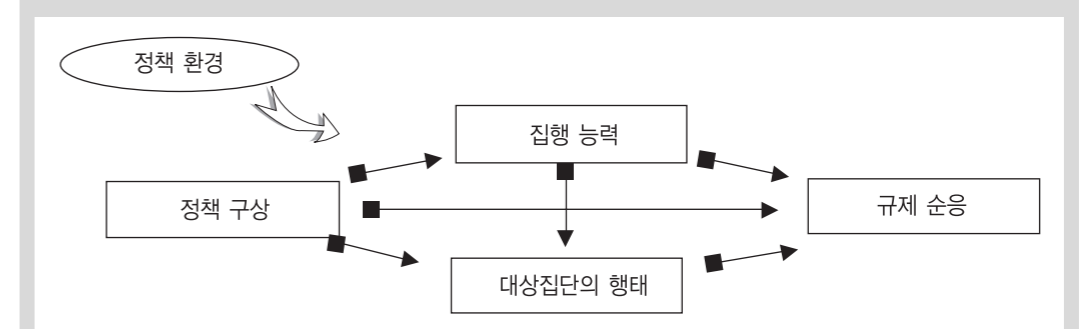


그림 2.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자료: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2) 규제순응 결정요인

규제 순응의 개별적 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규제 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들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 효과성, 정치적 수용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능률성의 관점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위하여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 그 효과나 성과 또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통성이 부여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규제대상 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규제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신축적인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표 2.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구 분	주요요인	세부내용
정책 환경	정치사회적 여건	정부신뢰도, 국민의 법의식
	경제적 여건	정부,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상황
정책 구상	정책결정과정	민주성, 투명성
	정책내용	소망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정책수단	규제수단의 혼합적, 순차적 선택
	협조체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집행 능력	정책결정자	순응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집행자원	예산, 인력규모, 관료의 자질
	집행구조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정책이해도	정책인지, 관련정보
대상 집단	감독/환류	모니터링, 결과 환류
	순응능력	인력, 시설, 자금, 기술
	순응의지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 규제에 대한 거부감
	정책이해도	정책내용의 이해 정도

자료: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표 3.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원 칙	내 용
원칙 1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1-1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분석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1-2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파악이 되어야 한다.
1-3	규제의 문제 확인 및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원칙 2	규제정책의 내용 및 결정과정이 규제순응친화적이어야 한다.
2-1	규제결정이 규제현장의 문제파악을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
2-2	규제개혁추진기관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3	규제결정시 규제대상집단 및 제3차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 한다.
원칙 3	규제순응 확보를 순차적 접근전략을 수립·실시한다.
3-1	규제수단은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3-2	가능한 한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3-3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원칙 4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4-1	규제대상집단 및 집행관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시켜야 한다.
4-2	제3차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4-3	규제정책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정치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
원칙 5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5-1	규제기관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5-2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원칙 6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6-1	지속적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 한다.
6-2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
6-3	규제순응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자료: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4) 규제순응의 확보와 규제의 질 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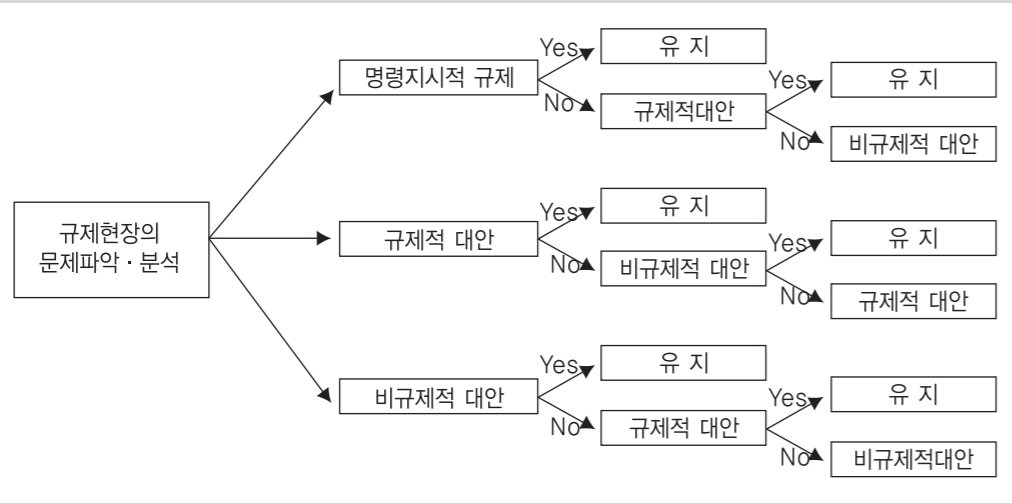
행정·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순차적 접근전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 및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대상에게 적합한 규제수단을 택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적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모형화한 것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4. 규제순응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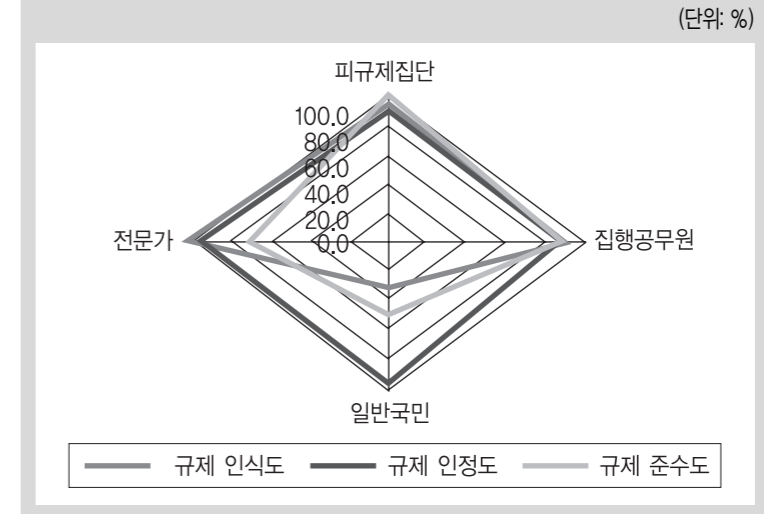
규제 순응에 관한 조사대상을 크게 4분류로

그림 3. 규제순응의 순차적 접근 모형



자료: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그림 4. 규제순응 조사결과



자료: 윤시문 외,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표 4.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

구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일반국민 (N=510)	전문가 (N=47)
규제 인식	인지도	• 인지 • 비인지	100.0 0.0	-	3.3 96.7	100.0 0.0
	이해도	•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인지	73.0 ~ 99.0	59.9 ~ 94.7	6.3 ~ 56.2	85.1 ~ 100.0
		• 대략적으로는 인지	26.0	36.8	50.0	14.9
• 말만 들어본 정도		1.0	5.3	43.8	0.0	
내용 명확성	• 명확함	74.0	84.2	-	-	
	• 명확하지 않음	26.0	15.8	-	-	
규제 인정	필요성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	90.0 10.0	87.5 12.5	95.1 4.9	89.4 10.6
	수준 및 내용 적절성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73.3 26.7	83.3 16.7	-	-
	규제수준 비적절 이유	• 적용기준(매출액) • 적용기준(종사원수) • 적용시기(년도) • 의무적용 대상품목 • 기타	19.4 ~ 50.0 30.6 ~ 25.0 25.0 5.6 19.4	25.0 ~ 50.0 25.0 ~ 25.0 25.0 25.0 0.0	-	-

나누어 실시하였다.

피규제집단(HACCP 의무적용을 실시하는 해당업체 업주 및 종사원), 집행공무원(현장에서 HACCP 지정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관계자와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제3차 집단(일반국민인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연 전문가 집단(한국 HACCP 제도 연구회 회원)이다.

일반국민은 총화무작위할당추출법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피규제집단은 유작위임의할당추출법, 공무원은 전수조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Delphi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전화조사 및 이메일조사를 병행하여 유효표본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집단 모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

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그림 4]에 규제인식도와 규제인정도 그리고 규제준수 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그래프화하여 제시하였다.

각 조사대상자별 규제 순응도 조사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 5.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 1) 인지도 및 인지경로

HACCP에 소비자 인지도는 1,015명을 대상으로 한 2002년 조사에서는 7.8%, 505명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조사에서는 9.7% 그리고 510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조사에서는 14.5%로 나타나서 매년 조금씩 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하

〈표 2〉 계속

구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일반국민 (N=510)	전문가 (N=47)
규제 인정 및 효과	•도움 됨	98.9	88.2	95.9	100.0
	•도움 안됨	1.1	11.8	4.1	0.0
규제 준수율	•잘 지킴	96.0	85.0	49.9	70.2
	•잘 안지킴	4.0	15.0	50.1	29.8
미준수 이유	•시설설치 및 개보수비용	20.0	22.2	19.5	16.4
	•전문인력 채용부담	10.0	22.2	12.7	14.5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됨	20.0	22.2	9.7	14.5
	•단속 등 행정처분미약	0.0	0.0	24.5	10.9
	•필요성을 못느낌	0.0	0.0	4.0	5.5
	•정부의 재정지원부족	10.0	11.1	9.4	7.3
	•업체의 투자부족	10.0	22.2	11.1	14.5
	•기술지원 부족	30.0	0.0	6.8	10.9
	•기타	0.0	0.0	2.3	5.5
	준수감시 가능여부	•현집행력가능	30.0	0.0	-
•현집행력적당		55.0	29.4	-	-
•현집행력불가		15.0	70.6	-	-
벌칙부과 적절성	•강화	13.0	21.1	70.8	34.0
	•현재수준	41.0	68.4	27.3	38.3
	•완화	46.0	10.5	2.0	27.7

자료: 윤시몬 외, 『HACCP 의무적응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의 주요 인지경로로는 구입제품을 통한 비율이 2002년 57.7%, 2005년 35.7% 그리고 2007년 41.6%로 다른 경로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매스컴(TV, 라디오)을 통한 비율도 19.2%, 26.2%, 32.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관의 직접홍보나 광고를 통한 인지비율이 낮게 조사된 점은 정책홍보의 아쉬움으로 판단된다.

## 2) 적용제품 구매경험

2002년도 조사결과에서는 대상자 중 64.6%, 2005년에는 89.5%가 HACCP 적용제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CCP 적용제품 위생안전 인식도에 대한 조사결과 2005년도에는 대상자 중 88.0%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2007년도에는 88.5%로 조사되어서 HACCP 구매 경험율과 HACCP 적용에 대한 위생안전 인식이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구매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HACCP 적용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시제품을 보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81.7%로 다른 이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HACCP 적용제품이 확대되고 많아지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정도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업체 자체적으로 효율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적용제품 구매의사

향후 HACCP 적용 제품의 구매 의향에 관한 조사결과는 2002년에 비해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소비자들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거나 가격이 동일하다면 구입하겠다는 비율

이 2002년에 69.1%, 2005년 84.7%, 2007년 85.1%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구매성향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 6. 정책제언

규제 순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방안과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의 문헌고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책활용 모델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결과 <표 5>와 같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적합한 규제순응도 활용모델은 “유형 5”와 “유형 7”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유형의 활용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홍보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결과로 분석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

표 5.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활용모델

구분	조사결과	순응도 제고를 위한 활용모델
유형 1	규제에 대한 인식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가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단속인력의 한계 보완 •단속방법의 합리화 및 규제대안의 검토
유형 2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인정도는 낮으나 규제준수율은 높은 경우	•규제준속여부 검토 •불가피한 경우 최소 준속기한 설정
유형 3	규제 인식·인정·준수율이 모두 높은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
유형 4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준수율이 모두 낮은 경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
유형 5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는 높으나 규제에 대한 인식도·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강화 •지도, 계몽, 단속 활동 강화 •규제수준, 내용, 집행방법 등 재검토
유형 6	규제에 대한 인식·인정·준수 모두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규제준속여부 검토
유형 7	규제의 인식도는 낮으나 규제의 인정도·준수율은 높은 경우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강화 •법령상 규제를 알기 쉬운 용어 개선 •규제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문화 또는 폐지

한 홍보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기업체는 이익집단이고 매출이익 및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식품)을 구매하는 일반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규제준수가 당연한 업체의 몫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지도 점검 그리고 미적용시 엄격한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순응 및 유도 와 함께 업주 스스로의 규제준수를 유도함으로

써 그 자체가 업체 매출향상과 영업이익에 비례할 수 있다는 기업전략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2)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2008년 이후부터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HACCP 적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반사항별 별칙 처분 근거와 HACCP 미지정 품목의 표시광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등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행자와 불이행자간의 처분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하되 합리적이고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냉동수산식품은 HACCP 지정범위가 어류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처리 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 냉동수산식품의 경우에 단순절단, 세척절단, 훈제가공, 순살가공, 반건조가공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원어 전처리는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머리절단, 머리내장제거까지만 위탁을 허용토록 하여야 한다.

### 4)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에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 보완

현재의 HACCP 의무적용 대상의 설정기준은 업체의 매출액과 종업원수이다. 매출액과 종사원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가변적) 의무적용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가 원활이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양식에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제 이 기준으로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산출(Filtering)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제한점이 되고 있어 향후 식약청은 관련 고시나 내부지침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효율적으로 보완 및 운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의무적용 대상업체 정보가 파악되어야 HACCP 의무적용 업체 선정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5)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일반시민들이 규제를 인지하여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한 감시 행정에 참여하는 자세 및 의식고취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한된 담당 인력에 의한 집행력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적인 추진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HACCP 자체의 인식도가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HACCP 이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HACCP 제도에 대한 언론매체나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제품구매시 HACCP 적용제품이 비적용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선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현장중심적인 홍보가 전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 및 인식을 높이는 동기 부여와 함께 식품 선택능력 및 판단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 집행능력 확보에는 제한이 뒤따른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능력을 향상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미래의 구매층이다. 학교 정규교육에도 HACCP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HACCP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적용사업장의 견학 등 현장 경험과 교육확대 그리고 재정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안)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대상품목의 적용시기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매출액 허위보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0일
종업원수 허위보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0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	모법 적용	모법 적용	모법 적용
교육훈련 준수사항 위반	모법 적용	모법 적용	모법 적용
HACCP 의무적용 및 위탁금지 규정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HACCP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	-
HACCP 의무적용 및 위탁금지 규정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또한 TV 및 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도 높을 것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모든 정부정책의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한계는 있기 마련이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인프라 지원보다는 사전교육 등을 통한 투자가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7. 나가며

강제적인 행정 집행력이나 법규정의 사후관리 강화만으로는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는 불가능하다. 사전관리 차원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함께 도모되면서 정부의 사전 규제차원의 법규정의 현실적 강화방안의 모색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분야는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사전적인 규제 즉, 기준규격이나 제한규제 등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정규제와 동일한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를 완화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은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새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준하여 조직 및 관련 법령 등의 개편 등을 추진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책방향을 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더불어 식품안전 수준확보 또한 나란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HACCP은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지만 규제목표의 최종 당사자가 다수의 국민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OECD의 권고사항처럼 일괄적인 사후규제 강화보다는 사전적 규제의 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부족한 행정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관리차원의 홍보·교육 등의 방안을 함께 병행 추진해야 HACCP 규제순응 제고를 통한 HACCP 제도 활성화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sup>본문</sup>